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761호 2010. 5. 26.(수)

차 례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3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 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공고 ---- 1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58호 인천광역시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2

회 람									
--------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35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舊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26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명칭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0.05.26~06.09(15일간)
3. 게시장소 : 전국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우리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검암신명2차, 검암신명4차, 검암풍림2차, 검암풍림3차, 경서가이아, 경서태평, 당하금강, 당하대우, 당하풍림1차, 당하풍림2차, 당하풍림3차, 마전대원1차, 마전대원2차, 마전대주, 마전풍림3차, 불로대림, 왕길검단풍림, 왕길신명, 원당금호, 원당대림, 원당동문, 원당신안, 원당엘지, 원당풍림아파트 게시판
4. 공고대상 : 2010.03.01~03.31.접수자 중 최초분양계약자(매도자)단독신청 “붙임참조”(77명)
5. 공고내용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의견(이의)이 있을 경우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계약서상 매수자 본인 신분증·통장·도장, 특약 있는 계약서 또는 영수증)를 첨부하여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를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시고, (공고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신청자(최초분양자 등)에게 환급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032-560-4757,4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자 명단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2010년 3월 매도자명단

연번	건물명칭	동	호	납부자	비고
1	검암신명2차	201	1103	신임순	최초분양자
2	검암풍림3차	304	304	고순영	최초분양자
3	검암풍림3차	306	1301	오병찬	최초분양자
4	경서태평	101	1001	노용녀	최초분양자
5	경서태평	101	1101	정영래	최초분양자
6	경서태평	108	802	서왕열	최초분양자
7	당하금강	103	402	이지영	최초분양자
8	당하금강	103	603	최양자	최초분양자
9	당하금강	104	702	김재철	최초분양자
10	당하금강	104	803	홍범유	최초분양자
11	당하금강	105	802	김시영	최초분양자
12	당하금강	106	1702	정승기	최초분양자
13	당하금강	107	202	장유금	최초분양자
14	당하금강	108	104	이경희	최초분양자
15	당하금강	109	1502	박귀임	최초분양자
16	당하금강	110	402	이남곤	최초분양자
17	당하금강	111	205	김운철	최초분양자
18	당하금강	114	1703	김창민	최초분양자
19	당하대우	101	403	정경아	최초분양자
20	당하대우	101	1501	박병석	최초분양자
21	당하대우	103	1703	김봉진	최초분양자
22	당하대우	104	301	최진몽	최초분양자
23	당하대우	104	801	이승평	최초분양자
24	당하대우	105	1402	김종석	최초분양자
25	당하대우	106	1102	황정하	최초분양자
26	당하대우	108	1902	함진구	최초분양자

2010년 3월 매도자명단

연번	건물명칭	동	호	납부자	비고
27	당하대우	111	301	황선호	최초분양자
28	당하대우	111	1001	왕진향	최초분양자
29	당하풍림1차	102	702	홍미정	최초분양자
30	당하풍림1차	102	1103	이진하	최초분양자
31	당하풍림1차	103	2003	김종천	최초분양자
32	당하풍림1차	104	1602	장희순	최초분양자
33	당하풍림1차	105	1404	최인용	최초분양자
34	당하풍림2차	205	1602	변종문	최초분양자
35	당하풍림3차	307	1103	민영숙	최초분양자
36	마전대원1차	102	701	김순노	최초분양자
37	마전대원2차	201	503	송은경	최초분양자
38	마전대원2차	201	1602	홍미정	최초분양자
39	마전대원2차	204	1602	고성희	최초분양자
40	마전대주	105	903	신순자	최초분양자
41	마전풍림3차	305	802	남택복	최초분양자
42	불로대림	103	1702	김혜승	최초분양자
43	왕길검단풍림	101	1004	오세정	최초분양자
44	왕길검단풍림	104	205	김혜란	최초분양자
45	원당금호	101	1201	곽연화	최초분양자
46	원당금호	102	102	이지원	최초분양자
47	원당금호	104	1201	이선희	최초분양자
48	원당대림	101	803	홍희숙	최초분양자
49	원당대림	104	302	서수경	최초분양자
50	원당대림	104	903	김은경	최초분양자
51	원당대림	104	1404	유정화	최초분양자
52	원당동문	105	301	오호신	최초분양자

2010년 3월 매도자명단

연번	건물명칭	동	호	납부자	비고
53	원당동문	106	902	한상원	최초분양자
54	원당신안	102	606	황춘자	최초분양자
55	원당신안	105	202	유현주	최초분양자
56	원당신안	107	1001	추을순	최초분양자
57	원당신안	110	301	손순이	최초분양자
58	원당신안	111	302	조경희	최초분양자
59	원당엘지	103	204	권회경	최초분양자
60	원당엘지	104	1303	김영섭	최초분양자
61	원당엘지	106	205	고지웅	최초분양자
62	원당엘지	108	1403	하미라	최초분양자
63	원당엘지	109	802	박승국	최초분양자
64	원당엘지	109	906	황장수	최초분양자
65	원당엘지	110	1303	이명호	최초분양자
66	원당엘지	112	1403	김봉주	최초분양자
67	원당풍림	102	601	기해경	최초분양자
68	원당풍림	103	103	최금례	최초분양자
69	원당풍림	105	401	최인복	최초분양자
70	원당풍림	106	1503	박경희	최초분양자
71	원당풍림	107	1401	백대현	최초분양자
72	원당풍림	109	1702	인성환	최초분양자
73	원당풍림	110	503	이종윤	최초분양자
74	원당풍림	110	1202	이순월	최초분양자
75	원당풍림	205	1602	신민자	최초분양자
76	원당풍림	208	203	강찬주	최초분양자
77	원당풍림	209	204	강찬주	최초분양자

[별지 제8호 서식]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신청서

(NO.)

권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조정신청
사 유

※ 신청인이 환급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할 것)

조정신청 대상자
및 증빙서류

- 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신청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 중
- ② **부담금 계약사실** 또는 **부담금 부담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영수증 원본,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의 제출이 가능한 자

위와 같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 신청 접수증

(NO.)

조 정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H.P)	
	과세물건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벌칙)에 의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의 환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5. 2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돌봄과 잔존기능을 유지·증진하고 가족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설치·위탁운영중인 서구치매센터는 市 특색사업으로 시 보조금이 지원·운영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과는 차별화된 시설로 일부 법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3조(업무) :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 신설
- 제6조(수탁자 선정) : 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를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개정
- 제12조(준용) : 「사회복지사업법」을 삭제하여 현 실정에 맞는 치매센터를 운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14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건강증진과장, 우편번호 : 404-190,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길(심곡동 246-1번지), FAX : 560-5029】 에게 제출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3호 다음에 제3조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1.

제6조 제2항 중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업무) 치매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p><u>3의2. <신 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생략) <p>제6조(수탁자 선정) ① (생략)</p> <p>② <u>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u>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u>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u></p> <p>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u>사회복지사업법</u>」,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물품관리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p>	<p>제3조(업무)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u>3의2.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현행과 같음) <p>제6조(수탁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u>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u>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u>」 제22조의2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p> <p>제12조(준용) ----- ----- --- 「<u>사회복지사업법</u>」 삭제----- ----- ----- -----.</p>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49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도로명:소로3류5호선, 사업명:가좌3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의거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0. 5. 25.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도로명:소로3류5호선, 사업명:가좌3동 현대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21-3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명 칭 : 소로 3류 5호선
3. 사업시행 면적·규모
 - 면 적 : 817.0㎡
 - 규 모
 - L=133.0m, B=6.0m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 성 명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5. 사업기간 : 2008. 10. ~ 2010. 5. 20.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0-658호

인천광역시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5.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 과오납 환부결정 비리예방을 위하여 징수관의 업무 조정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오납금 반환 업무 위임전결규정 개정사항 반영

-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징수관이 분임징수관에

게 위임할 수 없도록 함. (안 제4조제1항제3호)

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추정가격”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함.

(안 제5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6월 17일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우편번호 : 404-701,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FAX : 560-4159】 에게 제출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를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